

코로나 시대의 입법 그리고 이후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코로나 19의 확산과 포스트 코로나의 입법

- 코로나 19에 직면한 입법과 포스트 코로나 입법의 구별
- '위기' 자체와 '위기의 일상화'에 따른 법제의 구별
- 코로나 혹은 포스트코로나 ?



■ 근대의 위험/재난/위기 법담론 1

○ 안전에 대한 욕구의 지위 (Maslow, *Motivation and Personality*, 1954)

- 인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로 단계화됨
- 안전의 욕구는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위험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려는 욕구이고, 또한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위험으로부터 해방되려는 욕구, 일종의 자기보존 욕구
- 인간의 성장 단계를 욕구의 차원에서 설명

■ 근대의 위험/재난/위기 법담론 2

○ Richard Posner의 유형화 (Posner, *Catastrophe: Risk and Response*, 2004)

- **자연 재난(natural catastrophe)**: 14세기에 유럽에서 창궐하여 유럽 인구 1/4의 목숨을 앗아간 흑사병 같은 유행병이나 지진, 화산폭발 등
- **과학으로 인한 사고(scientific accidents)**: 과학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른 과학 실험 등으로부터 초래되는 위험:
- **기타 의도하지 않은 인위적 재난(other unintended man-made catastrophe)**: 인간의 행위가 원인이 되지만 그 결과가 의도치 않게 발생한 것으로서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 자연자원의 고갈 등
- **고의적 재난(intentional catastrophe)**: 생화학무기, 테러, 사이버 범죄와 같이 의도적으로 일어나는 유형
- 재난에 대한 법적 평가와 책임의 귀속에서 설명

■ 근대의 위험/재난/위기 법담론 3

○ 안전 개념의 분화(김대근, 안전 개념의 분화와 혼용에 대한 법체계의 대응방안, 2014)

- **Safety:** 국가가 개별적 능력으로 대처가 어려울 경우 소방 등 공공조직을 통해 공적인 도움을 제공하지만, 일차적으로 개인이 책임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서 국가의 관리, 감독 의무와 국민의 준수의무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고, 국민의 의무에 좀 더 비중을 둠
- **Security:** 개인의 주의의무만으로 확보할 수 없는 '안보' 개념에 가까우므로 공권력을 가진 국가적 책임이 개인적 책임보다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서 국민의 준수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국가의 책임만을 명시
- 책임의 일차적 주체와 국가의 책무 측면에 따른 분류

○ 생명관리정치([Michel Foucault](#),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8-1979)

- 생명관리정치는 규범을 정하기보다는 의료화된 인구의 행동에서 출현
- 예컨대 천연두는 스페인의 흑사병 같은 '창궐 현상'이 아니라 인구 가운데 존재하는 '사례'로 등장 ► 종두 캠페인과 일반화된 예방접종법 등을 통해 예방 가능한 질병
- 사례라는 개념을 통해 위험은 포착 가능한 것이 됨. 그에 따라 안전은 금지의 대상에서 조절의 대상으로 변모

■ 근대의 위험/재난/위기 법담론 3

○ 위험[형]법 또는 안전[형]법

- 위험사회, 울리히 벡(Ulrich Beck, 1944 – 2015)

○ Danger가 아닌 Risk

- **Danger:** 우발적 위험, 외부로부터의 위험 ▶ 근절과 예방의 대상
- **Risk:** 감수된 위험 ▶ 관리의 대상, 통제와 형량(weighing)의 필요성

○ 위험[형]법의 구조

- (개인적 법익이 아닌) 보편적[사회적, 국가적] 법익의 발달- 명확성 원칙의 침해
- (구체적 위험이 아닌) 추상적 위험의 강조- 예방의 강조
- 기능적 법의 등장: 하부체계를 규율하는 파편적 법[특별법, 특례법 등]의 남발
- 시작은 우발적 위험 · 외부로부터의 위험[danger]이지만, 점차 감수된 위험[risk]으로서 관리의 대상으로 변화

○ 팬데믹의 경우

- 코로나 시대의 법이론과 포스트 코로나의 법이론의 구별 필요성
- 보편적 법익 보호와 추상적 위험 예방을 위한 기능적 입법 ▶ ?

■ 관련 법규

○ 국가위기관리 관련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법률 제15764호) 제34조의5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88호)

○ 보건의료.감염병 관련 규정

- 보건의료기본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검역법
- 의료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관련지침

-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코로나 시대[2020.01.01.-2020.05.21.]의 입법 발의 동향

○ 동 기간 중, 입법 발의 및 가결 현황

- 발의된 총 법률안은 477건, 코로나 관련 발의된 법률안은 46건 (약 9.6%)
- 발의: 의료 관련 법률안은 18건(39%), 비의료 관련 법률안은 28건(61%)
- 가결: 의료 관련 법률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은 3건(16%), 비의료 관련 법률안[조세특례제한법 2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출입국관리법]은 4건(13%)

○ 동 기간 중, 시간에 따른 코로나 관련 법률안 발의의 추이

	01.20-02.22	02.23-03.21	03.22-04.19	04.20-05.05	05.05-05.20
의료 법안	10건	7건	1건	-	-
비의료 법안	3건	11건	6건	6건	1건
기타 (결의안 등)	1건	6건	-	1건	-
총계	14건	24건	7건	7건	1건

■ 코로나 시대[2020.01.01.-2020.05.21.]의 입법 발의 동향

○ 동 기간 중, 입법 발의 및 가결 현황

- 발의된 총 법률안은 477건, 코로나 관련 발의된 법률안은 46건 (약 9.6%)
- 발의: 의료 관련 법률안은 18건(39%), 비의료 관련 법률안은 28건(61%)
- 가결: 의료 관련 법률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은 3건(16%), 비의료 관련 법률안[조세특례제한법 2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출입국관리법]은 4건(13%)

○ 동 기간 중, 시간에 따른 코로나 관련 법률안 발의의 추이

	01.20-02.22	02.23-03.21	03.22-04.19	04.20-05.05	05.05-05.20
의료 법안	10건	7건	1건	-	-
비의료 법안	3건	11건	6건	6건	1건
기타 (결의안 등)	1건	6건	-	1건	-
총계	14건	24건	7건	7건	1건

■ 코로나 시대[2020.01.01.-2020.05.21.]의 입법 발의 동향

○ 국내 최초 확진자 발생-감염병 확산 초기[2020. 01. 20-2020. 02. 22]

- 의료 법안이 대부분 (약 71%)
- 비의료 법안 세 건은 각각 교육(보건), 경제(고용,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내용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으로 격상-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전 [2020. 02. 23-2020. 03. 21]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한글 표현 '코로나19'가 2월 12일 발표되었으나, 2월 12일부터 3월 12일까지는 법안명 또는 상세한 사항에 '우한 코로나 전염병', '우한 폐렴' 등 지역 차별적인 명칭을 사용한 표현이 의안에 등장
- 코로나19 사태가 심화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심각해짐에 따라 의료 법안보다 비의료적인 법안들이 많이 입안되었으며 (조세, 지방세 등 약 46%),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결의안이 통과 (특별위원회 조성의 건,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

■ 코로나 시대[2020.01.01.-2020.05.21.]의 입법 발의 동향

○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간[2020. 03. 22-2020. 04. 19]

- 특히 피해를 크게 입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대한 특별지원을 촉구하는 의안이 등장 (우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대구경북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촉구 결의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의한 대구광역시·경상북도의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이 시점부터 의료 관련 법률안을 입안하는 경우가 크게 감소, 4월 이후로는 아예 입안되지 않음. 총선 여파로 추정

○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간[2020. 04. 20-2020. 05. 05]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대한 특별법안을 제외하면 비의료 법안 6건 모두가 조세 관련 법안만 발의

■ 코로나 시대[2020.01.01.-2020.05.21.]의 입법 발의 동향

○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중-회기 마지막 날[2020. 05. 06 – 2020. 05. 20]

- 제출된 의안 중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가결

○ 소결

-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에 대해 초기 입법은 의료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점차 여파를 고려하여 경제 등 민생 분야를 지원하는 법률에 집중하는 경향.
- 초기에는 직접 규제[형벌과 과태료 등 제재 중심, 거주·이전의 제한] 방식으로 대응하지만, 점차 간접 규제[조세 감면과 경제 지원, 및 정보통제] 방식으로 대응함

■ 메르스(2015) 대응과의 차이점 (1)

개편 전

- 감염병 정보 수집·분석 미흡
- 감염병 국제 네트워크 미흡

- 오염국가 구분없는 문자서비스
- 다수에 대한 집단검역
- 입국 검역 시 본인진술 외의 정보파악 곤란
- 인천공항검역소에 비음압격리관찰실(21개)

- 공중보건의 위주의 역학조사관
- 상황 발생 후 대책본부 구성
- 현장초동조치 시스템 미흡

1.

유입차단

및

초기대응

개편 후

- 위기분석국제협력 전담부서 신설
- 해외 감염병 발생동향 파악 및 정보공유
- WPRO 고용·휴직직위 신설 및 역학조사관 파견

- 오염지역별 맞춤형 감염병 문자서비스 제공
- 위험국가 입국자 1:1 전수 게이트검역
- 위험국가 방문자를 입국 후 잠복기까지 관리하는 스마트 검역시스템 구축
- 인천공항검역소에 음압격리관찰실 확충(50개) 및 BL3 검사실 설치

- 정규직 역학조사관 확보(중앙 30명, 지자체 34명)
- 방역직류 신설
- 24시간 365일 긴급상황실 운영
- 현장을 즉시 통제하는 즉각대응팀 구성

■ 메르스(2015) 대응과의 차이점 (2)

개편 전

·진단검사 지연(NIH 1개 기관)

·감염병 접촉자 격리시설 부재
·개별 시스템 운영으로 분절적 대응

·음압병상 부족
·감염병 전문치료기관 부족
·위기 발생 후 산발적인 자원 비축

2.

유행 확산 시

총력 동원

개편 후

·진단검사 신속시행(1일 이내, 18개 기관)
·표준화된 진단검사 통합지침 배포
·진단·치료제 긴급도입 제도화

·시도별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감염병별 감시·역학조사·환자관리 등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확충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법적 근거 마련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 수립
·감염병 환자 검체자원화를 통한 연구기반 마련

■ 메르스(2015) 대응과의 차이점 (3)

개편 전

- 감염병 위기 시 중앙-지방 간 역할 불명확에 따른 혼선
- 병원명 공개 지연으로 국민 불신

3.

거버넌스 개편

개편 후

- 질본 차관급 격상 및 조직·인력 확충
- 질본이 방역 컨트롤타워 역할
-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및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
- 지자체 감염병 대응 조직·인력 확충(시도 16명, 보환연 67명, 보건소 283명)
- 위기소통 전담부서 신설
- 감염병 확산 시 정보공개 법령 마련

■ 메르스(2015) 대응과의 차이점 (4)

개편 전

·과밀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대규모 감염 발생

·6인실 위주 입원실
·가족·사적간병 문화

·병원감염관리 인프라 미흡

·병원쇼핑, 병문안 등 문화적 특성이 감염 확산

4. 병원감염방지

의료환경개선

개편 후

·응급실감염병 환자 선별진료 및 격리병상 확충
·응급실 보호자방문객 출입통제 및 명부관리
·24시간 초과 응급실 체류제한

·4인실 위주 입원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감염관리실 설치병원 확대 및 인력요건 강화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
·인증평가에 감염관리영역 강화
·감염방지 1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

·병문안 권고문 마련
·상급병원 지정 시 의뢰·회송체계 및 병문안 개선체계 의무화

■ 코로나에 대한 초기 제재 및 통제 정책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코로나19 긴급연구” 참조)

○ 제재 대상과 영역

- 역학조사 거부
- 감염병 의심자의 진단 거부
- 자가격리 위반

■ 역학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

○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④ (생략)

■ 역학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

○ 2015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개정 (2015.7.6.)에 따른 변화

- 행위유형 확대: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유형을 종래의 "역학조사의 거부, 방해, 회피행위" 이외에 ① 거짓 진술 또는 거짓 자료 제출행위와 ② 고의적인 사실 누락·은폐행위를 추가하여 규정
- 법정형 상향조정: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법정형)을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조정(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및 제79조 제1호)

○ 문제점: 불리한 진술 거부의 권리와 충돌

■ 감염병 의심자의 진단 거부

○ 2020년 2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2020.02.26. 국회 본회의 통과)의 주요 특징

- 의사 등의 신고·보고의무 내용에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를 추가(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신설)
- 보고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제13조 제2항 신설)
- 이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법 제80조 제2호의2 신설)
- 또한, 감염병병원체 검사(법 제13조 제2항)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조치로서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진찰을 받게 하도록 규정(법 제42조 제4항).
- 이러한 강제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법 제80조 제5호)

■ 감염병 의심자의 진단 거부

○ 문제점

- '의심'과 같은 주관적 판단에 대한 강제처분성 부여+형벌 부과
-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중 하나인 명확성 원칙과 충돌

■ 자가격리 위반

○ 2020년 2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서는,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격리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시에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

-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자가 또는 시설격리, 유선·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증상 여부 확인, 격리 중이거나 증상여부를 확인할 때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법 제42조 제2항 신설)

-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상향조정(법 제79조의3 신설)

■ 자가격리 위반

○ 문제점

-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1항은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강제조치이고, 제2항은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강제조치임. 위반시 두 경우 모두 법정형이 동일한데, 가벌성에 대한 평가를 달리할 필요 있음
- 중한 결과 발생에 대한 제재 미흡: 자가격리를 거부하거나 자가격리 수칙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하여 결과적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킨 경우 가중처벌의 필요성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쟁점

○ 낙수 효과가 아닌 직수효과- 기본소득 논쟁의 가속화

○ 노동의 분화

- 대면 노동자와 비대면 노동자, 위기에 따른 고용 유연성 강화

-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 재택근무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원격노동자(The Remotes), 어쩔수 없이 출근해 코로나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필수 노동자들(The Essentials),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고되거나 휴직중인 무급자들(The Unpaid), 코로나 팬데믹 대응에 대처가 불가능한 잊혀진 자들(The Forgotten)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쟁점

○ 정보 의존성 심화: 프라이버시 등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과 빅데이터 구축

- 지역별·날짜별 환자 발생 현황, 환자의 동선 데이터 확보, 공급마스크 및 선별진료소 안내, 피해지원 정책 안내 관련 정보 축적

- 일반인/입국자 및 여행객/자가격리자/의료기관/다중이용시설/지자체/기업 및 시장/거리두기 관련으로 이용자가 각각 상황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정보 분화

○ 국가 통제의 강화 및 전문가 영역[과학기술]의 의존성 심화

○ 비접촉 내지 비대면의 일상화와 전자화- 원격 교육, 원격 진료, 원격 재판, 교정의 과밀화 문제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쟁점

○ 사회적 약자의 재구조화

- 왜 요양병원에서 유독 다수의 확진자가 빈번하게 발생하는가
- 취업과 실직
- 여성의 자살률
- 외국인, 특히 난민(신청자)와 (불법체류)외국인
- 교정시설에 수용된 재소자 및 아동청소년
- 대면노동의 문제: 의료, 물류, 배달, 교육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의 방향 - 서설

○ 비대면 범죄의 증가?

- 피싱, 파밍, 스미싱 등 기술적 수단을 사용한 비대면 금융사기범죄 증가

○ 대면 범죄의 감소?

- 강도, 절도, 폭력 등

○ 구금과 같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 등 사회 내 처우의 활용

- 교정의 과밀화 해소
- 불구속 수사의 확대
- 전자발찌와 같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활용 확대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의 방향 - 범죄 동향 (1)

- 112 신고 증감율 분석에 기반한 범죄발생 변화(김혜진, 치안정책연구소)
 - 전년 동기간(19년 1~8월) 대비 3.5% 감소(7,130,128건->6,883,226건)
 - 증감율: 1월(1.6▲) 2월(3.5▲), 3월(8.0▼) 4월(5.9▼) 5월(6.9▼) 6월(3.0▼) 7월(3.8▼) 8월(3.1▼)
 - 확진자 수가 1차 급증한 3월에는 신고건수가 급감한 반면, 2차 급증한 8월말에는 소폭 감소
- 20년 1월 ~ 9월까지 “코로나” 라는 단어가 언급된 112신고 55,387건을 추출하여, 자연어처리(KRword Rank, LDA topic analysis) 분석(김혜진, 치안정책연구소)
- 코로나 신고에서 빈번하게 언급된 단어 (KRword Rank 분석):
- 위치추적(55.56), 마스크 미착용(36.53), 신천지(31.20), 보건소(27.09), 의심(25.76), 접촉(24.18), 확진자(19.67), 감염(16.29), 15.83, 대구(15.10)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의 방향 - 범죄 동향 (2)

○ 가정폭력 증가? (윤상연 등, 치안정책연구소)

-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 코로나19로 인한 유럽 내 봉쇄조치 이후 가정폭력 신고 사례가 급증하여 유엔사무총장, 유엔여성기구 총재 등 경계 촉구(BBC, 2020.4.1); Global Psychology Leadership Team은 가정폭력 (심리적, 신체적, 성적) 증가에 따른 대응 촉구
- 국내의 경우 대전 지역에서 가정폭력 증가 사례 보고(news1. 2020.5.1)
- 가정폭력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으며, 2020년 들어서도 전년 대비 감소(6.2% ▼)
- 요일별/시간대별 교차분석 결과, 2020년 들어 평일(특히 화수목) 09시-15시 발생비율이 증가한 반면, 원래 발생 비율이 높던 21-03시 발생비율은 감소, 주말(금토일월)에는 09시-15시/15-21시까지 발생비율이 증가
- 함의: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가정폭력 발생량이 소폭 감소하였지만 오전-오후로 가정폭력 발생 시간이 이동하는 것을 확인. 그리고 불안(스트레스)이라는 인지, 감정적 요인보다 내, 외부 활동이라는 행동(▶ 접촉 형태) (ex. 도로교통량) 요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의 방향 - 법제 변화

○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 특허·민사·행정·가사소송에서는 전자소송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형사절차(형사소송)의 경우, 2010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기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도입되었고,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이하 '약식전자문서법') 기해 일부 약식절차사건에서 전자소송이 도입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음주·무면허 약식절차사건에서만 전자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협의의 형사절차(형사소송) 전자화': 형사절차 관련 기관(경찰, 검찰, 법원, 기타 기관) 간에 사건관련 기록, 증거 등을 전자적으로 전달하고, 그 기록 또는 증거를 출력 등을 통해 물건화하는 조치 없이 법정에서 현출하거나 사건관련 기록 등을 사건관계인 등에게 열람토록 하거나 송달·통지해야 할 사항을 전자적으로 송달·통지하는 것

- '광의의 형사절차 전자화'란 각 기관별 고유 업무분야에서의 전자적 업무처리까지 포함

감사합니다.